

행 정 명 령 서

1.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-19를 예방하고 지역 내 확산을 막기 위해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아래와 같이 전라남도 내에서 마스크 착용 의무화 행정명령을 시행합니다.

가. 대 상 : 전라남도 전 지역 거주자 및 방문자

나. 기 간 : '20. 08. 21.(금) ~ 별도해제 시

다. 계도기간

- (당 초) '20. 08. 21. ~ 10. 12.
- (연 장) '20. 10. 13. ~ 11. 12.

라. 착용 시설·장소·대상

- (다중이용시설 등 : 단계별 집합제한 시설)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별 **집합제한**(방역수칙 의무화)시설의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 ※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변동 시 시설 조정
 - (1단계 : 집합제한시설) 유흥주점, 콜리텍, 단란주점, 감성주점, 헌팅포차, 노래연습장, 실내 스탠딩공연장, 실내 집단운동(격렬한 GX류),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, 대형학원(300인 이상), 뷔페, 유통물류센터
 - (2단계 : 집합제한시설) 1단계 집합제한시설 포함, 학원(300인이하 단, 9인이하 교습소 제외), 오락실, 일정 규모 이상 일반음식점(150㎡ 이상), 워터파크, 종교시설, 실내 결혼식장, 공연장, 영화관, 목욕탕·사우나, 실내 체육시설, 멀티방·DVD방, 장례식장, PC방
- (대중교통) 버스·지하철·택시 등 대중교통 운수종사자·이용자
 - ① 「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2호에 따른 대중교통 수단(노선버스, 기차, 여객선 등), ② 「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」 제3조제2항에 따른 구역여객자동차운송사업에 사용하는 차량(통근·통학버스, 관광버스 등 전세버스, 택시 등), ③ 「항공안전법」 제2조제1호에 따른 항공기(비행기-여객기)
- (집회·시위장) 다중이 군집하는 집회의 주최자·종사자·참석자
 - * 「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」 제2조제1호, 제2조제2호에 따른 옥외집회, 시위
- (의료기관) 의료기관의 종사자·이용자
 - * 「의료법」 제3조 제2항에 따른 의료기관
- (요양시설, 주야간보호시설) 입소자·이용자를 돌보는 종사자
 - * 「노인복지법」 제34조에 따른 노인의료복지시설 중 요양시설
 - 「노인복지법」 제38조에 따른 재가복지시설 중 주야간보호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
- 착용 시설·장소 이외의 사업주(책임자)·종사자·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권고[별표]

마. 마스크 종류

- KF94, KF80, KF-AD(비말차단), 수술용 마스크
- 입과 코를 가릴 수 있는 천(면) 마스크, 일회용 마스크
 - ※ 망사형 마스크, 밸브형 마스크, 스카프 등의 옷가지로 얼굴을 가리는 것은 마스크 착용으로 인정하지 않음

바. 마스크 착용법

- 규정된 종류의 마스크로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릴 것

사. 마스크 착용 지도·점검 및 과태료 부과

- 시장·군수는 마스크 착용 의무화 시설·장소에서 위반행위 적발 시, 당사자에게 마스크를 착용할 것을 지도하고, 불이행시 질서위반행위규제법*의 절차에 따라 과태료 부과 ※ 각 시설별 담당자가 지도·점검 및 단속 실시

* 위반행위 적발 → 신분증 제시, 단속근거 설명 → 위반자 인적사항 확인 → 사전통지 및 의견제출 안내(10일 이상의 의견제출 안내) → 과태료 부과통지 → 이의제기 안내(60일 이내)

** 마스크 착용시 호흡이 어려운 사람은 의견제출 기간 내 의료법 시행규칙 제9조에 따른 진단서 또는 소견서 제출 가능

- (과태료 금액) 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300만원 이하*

* 감염병예방법 제83조(과태료) 제2항, 제4항, 제5항 (개정 '20.8.12 및 시행 '20.10.13),

* 동법 시행령 제33조(과태료의 부과) 별표 3 개정 중 (시행 '20.10.13)

(위반당사자 10만원 및 관리·운영자 1차 위반 150만원, 2차 위반 300만원)

- (과태료 부과권자) 시장·군수

- 과태료 부과대상 예외자 및 예외상황

- (예 외 자) 만14세 미만 및 마스크 착용이 어려운 사람

- (예외상황) 세면, 음식섭취, 의료행위, 공연 등 얼굴이 보여야하는 불가피한 상황

아. 벌칙규정 :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(과태료)

자. 손해배상 : 위반하여 코로나19 방역에 피해와 손해를 입힐 경우 관련 법의 행정처분외 별도의 손해배상 및 치료비 청구 가능

차. 관련근거

- 「감염병 예방법」 제49조(감염병의 예방조치)제1항 제2호 2의2, 2의3, 2의4

2. 이 명령에 위반한 자는 「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」 제83조 제2항, 제4항, 제5항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고(단, 과태료의 경우 2020년 11월 12일까지 계도기간), 위반으로 발생한 모든 확진 관련 검사·조사·치료 등 방역비용이 구상청구 될 수 있습니다.

3. 이 처분에 대해 불복하거나 이의가 있는 경우에는 이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「행정심판법」 제23조 제1항에 따라 전라남도행정심판위원회에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으며 「행정소송법」 제9조에 따라 소재지 관할 행정법원에 취소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.

2020년 10월 12일

전라남도지사



○ (실내) 마스크 상시 착용

* 실내란 버스·택시·기차·선박·항공기, 기타 차량 등 운송수단, 건축물 및 사방이 구획되어 외부와 분리되어 있는 모든 구조물을 의미함

○ (실외) ①집회·공연·행사 등 다중이 모이는 경우(거리두기에 관계없이 마스크 착용), ②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어려운 경우

○ 실내·외에서 마스크 착용을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

- 집·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거나, 외부인 없이 가족 등 동거인과 함께 있을 때

※ 가정에서 65세 이상 어르신, 기저질환자, 임산부 등 고위험군과 함께 생활하거나, 고위험군이 있는 가정을 방문하는 경우 가족이라고 하더라도 마스크 착용 권고

- 실외에서 다른 사람과 2m 이상 거리두기가 가능할 때

- 마스크를 착용하고 하기 어려운 활동을 하는 경우

■ 음식·음료를 먹거나 마실 때

■ 수영장·목욕탕 등 물속·탕안에서 있을 때

■ 세수, 양치 등 개인위생 활동을 할 때

■ 검진, 수술, 치료, 투약 등 의료행위 중 마스크 착용이 어려울 때

■ 얼굴을 보여야 하는 공연(무대에 있을 때로 한정), 방송 출연(촬영할 때로 한정하며, 유튜브 등 개인방송은 제외) 및 사진 촬영(촬영 할 때로 한정), 수어통역을 할 때

■ 운동선수, 악기 연주자가 시합·경기 및 공연·경연을 할 때

■ 결혼식장에서 신랑, 신부, 양가 부모님이 예식을 할 때

■ 본인 확인을 위한 신원확인 등 마스크를 벗어야 할 때